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2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